

## 제 4 장 섬유 및 의류

### 제 4.1 조 양자 긴급조치

1.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이 협정상의 특혜관세대우로 혜택을 받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실제적 우려를 야기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그 상품의 국내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그 국내 산업에 의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2.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실제적 우려를 결정함에 있어, 수입 당사국은 가.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그 상품의 증가된 수입이 특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량 · 생산성 · 설비가동률 · 재고 · 시장점유율 · 수출 · 임금 · 고용 · 국내가격 · 이윤 및 투자와 같은 관련 경제적 변수의 변화에 반영된 대로 심사한다. 이 변수 중 어떠한 것도 반드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 기술 또는 소비자 기호의 변화는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실제적 우려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요소로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수입 당사국은 조사 후에만 이 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은 가. 이 조에 따른 조사를 자국이 수립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그리고 나. 이 협정의 발효일에 또는 자국이 이 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의 절차를 전달한다.

4. 수입 당사국은 긴급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의 서면통보를 지체없이 수출 당사국에게 전달하며, 수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과 그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5. 수입 당사국은

가.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긴급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

나.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철폐하여야 하는 날 후 10년을 초과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리고

라. 긴급조치가 종료되는 때에, 그 조치가 없었더라면 유효하였을 관세율을 긴급조치의 적용대상이 되었던 상품에 적용한다.

6. 이 조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무역 자유화 보상을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긴급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수출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양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제한된다. 양 당사국이 긴급조치의 적용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긴급조치가 취하여진 상품의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취하여진 긴급조치의 무역효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진 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관세조치는 긴급조치를 취한 당사국의 어떠한 상품에 대하여서도 취하여질 수 있다. 관세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만 관세조치를 적용한다. 수입 당사국의 무역보상을 제공할 의무와 수출 당사국의 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는 긴급조치가 종료되는 날에 소멸된다.

7.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른 긴급조치와 다음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취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제10장(무역구제)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 제 4.2 조 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

### 제6장의 적용

1. 부속서 4-가 및 4-나를 포함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규정은 비특혜 목적으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협의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의 공급 가능성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특정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4. 제3항에 언급된 협의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한 특정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의 자국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생산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다.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생산자가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의 상업적인 물량을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공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실질적인 생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양 당사국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의 전달 후 60일 이내에 협의를 종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그 협의에서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개정사항은 양 당사국이 제24.2조(개정)에 따라 승인한 때에 그러한 상품의 종전 원산지 규정을 대체한다.

###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원사 및 원단을 포함하는 상품을 위한 과도 절차

6. 부속서 4-나는 당사국 영역에서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을 포함하는 특정 상품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명시한다.

### 최소허용수준

7.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어떤 섬유원료 또는 원사가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에 탄성사를 포함하는 상품은 그러한 원사가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sup>1)</sup>

### 세트의 취급

8. 부속서 4-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일반해석규칙 3에 따라 소매용 세트를 구성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은, 그 세트 내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거나 세트 내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치가 세트의 관세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제 4.3 조

###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협력한다.

- 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 당사국의 각자의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지원하는 것
- 나. 원산지 신청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보장하는 것

1) 제7항의 목적상,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이라 함은 필라멘트, 스트립, 필름 또는 쉬트의 추출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필라멘트를 완전히 연신하거나 필름 또는 쉬트를 스트립으로 가늘게 벗기는 것이나, 모든 섬유를 원사로 방적하는 것,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최종적인 사 또는 합사로 끝나는 모든 생산 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다.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라.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의 우회를 방지하는 것

2. 가. 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sup>2)</sup>을 통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섬유 또는 의류의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각 인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고 매년 갱신한다.

1)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그 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섬유 또는 의류 설비의 소재지를 포함하여, 그 인의 성명 및 주소

2) 그 인의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기업의 경우, 그 소유자·관리자 및 회사 임원의 성명과 국적 그리고 그 기업 내의 직위

4) 그 인이 고용한 피고용인의 수 및 그들의 업무

5) 그 인이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과 그 인의 생산능력

6)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 인이 사용하는 기계의 수 및 종류

7) 대략적인 주당 기계 가동 시간

8)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원단·원사 또는 섬유원료를 그 인에게 공급하는 자의 신원, 그리고

9) 그 인의 미합중국 내 고객 각각의 성명 및 연락처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 미합중국에게 이 정보를 매년 제공한다.

나. 대한민국은 다음의 생산에만 종사하는 인에 대하여는 가호에 명시된 정보를 획득하여 미합중국에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1) 미합중국으로 수출되지 아니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섬유원료·원사 또는 원단, 또는

2)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이는 안감 재료로 사용된 원단 이외의 것으로서, 미합중국으로 수출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분류된 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상품

---

2) 제2항의 목적상,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산업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이다.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61류에 분류된 상품의 경우, 부속서 4-가의 제61류의 류 규칙 1, 또는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62류에 분류된 상품의 경우, 부속서 4-가의 제62류의 류 규칙 1

다. 대한민국은, 자신의 상품판매를 위하여 미합중국내의 수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가호7목 내지 9목에 명시된 정보를 획득하여 미합중국에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sup>3)</sup>

라. 대한민국은 가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대표적인 업계단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그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제7.6조(비밀유지)는 대한민국이 비밀로 지정하고 이 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수출 당사국은 수입자가 그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검증을 수행한다. 수출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검증을 자체 발의로 수행할 수 있다.

4.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환적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검사하도록 노력한다.<sup>4)</sup>

5. 수출 당사국의 인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불법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수입 당사국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채택하고 유지하는 조치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그 밖의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어느 쪽 당사국의 조치를 포함하여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가능한 통관 조치를 그 인이 준수하고 있음을 수입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

3) 어떠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은 가호1목 내지 6목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중소기업의 생산물이 사용된 최종 제품의 생산자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4) 제4항은, 원산지 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자국의 영역에서 가공 또는 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환적된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과 그러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외에 수출 당사국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 신청이 정확함을 수입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이 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제7.5조(협력)에 규정된 유형의 관련 사실 정보 또는 다음을 나타내는 요소에 기초한 의심을 말한다.

가.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된 조치를 포함하여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가능한 통관 조치에 대한 기업의 우회, 또는

나.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국제협정에 관한 조치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러한 협정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권리 또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달리 용이하게 할 행위의 존재

6.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수출자·생산자나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행되는 검증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인의 사업장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함께 방문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출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그 검증을 지원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한 모든 방문은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의 인에게 사전 통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5)</sup>. 수출 당사국은 방문 시점에 그 인으로부터 현장 방문의 수행에 대한 허락을 구한다.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수입 당사국의 적절한 공무원에 의한 방문에 동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이 완료될 수 없고 제3항 또는 제5항에 기술된 결정이 내려질 수 없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제10항에 기술된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각 당사국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검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생산·무역 및 운송 문서와 그 밖의 정보를 자국 법에 합치되게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검증 과정에서 양 당사국간에 교환된 모든 문서 또는 정보를 제7.6조(비밀유지)의 의미상의 비밀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 문장 및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정부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이 조에 따라 그 기관에 제공된 정보를 그 당사국의 다른 정부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

5) 제6항을 이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그 인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경할 위험 때문에, 자국의 공무원이 그 인에게 사전 통보를 제공할 경우 검증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것으로 추정한다.

8. 검증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수입 당사국은 자국법에 합치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조치는 다음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중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제3항에 따른 검증의 경우, 원산지 신청이 이루어진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나. 불법 행위의 의심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의 대상인 인에 의하여 수출되거나 생산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관련되는 경우, 그 상품<sup>6)</sup>

9.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도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 및 사실을 포함하여 검증의 결과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7.6조(비밀유지)는 보고서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에 적용된다.

10. 가.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검증 요청 후 12월 이내에 제3항에 기술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섬유 또는 의류 상품과 그 상품을 수출하였거나 생산한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한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자국법에 합치되게 취할 수 있다.

나.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검증 요청 후 12월 이내에 제5항에 기술된 결정 중 하나를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모든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자국법에 합치되게 취할 수 있다.

11. 제10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 통보한다. 수입 당사국은 자국이 각 경우에 맞게 제3항 또는 제5항에 기술된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한 정보를 수령할 때까지 제10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다.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이 조에 규정된 대로 우회에 관여된 것으로 결정한 인 또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인의 신원을 자국법에 합치되게 공개할 수 있다.

---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항의 어떠한 규정도 제7.2조(상품의 반출)에 따른 상품의 반출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 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또는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당사국의 협력 노력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이에 더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이 조를 이행하는데 있어 다른 쪽 당사국에게 기술적인 또는 그 밖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당사국은 이에 우호적이고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13. 이 조에 따른 협력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문제되는 사안의 간략한 내용과 요청하는 협력사항을 포함한다.

#### 제 4.4 조

####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섬유 및 의류 무역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 제 4.5 조

####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원산지 신청**이라 함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거나 당사국의 상품이라는 신청을 말한다.

**수출 당사국**이라 함은 그 영역으로부터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수입 당사국**이라 함은 그 영역으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50인 미만의 피고용인을 고용한 기업을 말한다.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라 함은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에 기재된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환적**이라 함은 상품을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올 때 사용된 운송수단으로 부터 그 상품을 옮겨서 그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가지고 나갈 목적으로 그 상품을 같은 또는 다른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